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과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하늘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사회 참여 활동지원 등 문화센터의 기능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센터의 명칭은 “하늘문화센터”라 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산 352번지 일원에 둔다.”라는 위치를 명시함(안 제2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다. 문화센터 기능 수행과 문화센터 시설 사용, 건강·문화강좌 및 교양·문화강좌 개설·운영 및 상시 사용자를 위한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둠(안 제4조부터 안 제5조)

라. 문화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개관 및 휴관, 사용시간 등, 사용허가 제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등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1(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2,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복지의 창달을 위한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문화센터의 명칭은 “하늘문화센터”라 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산352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문화·복지 시설”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에서 설치·관리하는 문화·복지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이라 함은 문화·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으로 대관료, 수강료, 강습료 등을 말한다.
4. “전용 사용자”라 함은 문화·복지시설 및 운동시설 공간 중 일정공간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문화·복지 프로그램 수강생 및 문화시설을 이용한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4조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라 함은 학교, 법인, 사회단체, 동호회 등 사용자를 포함한 이용자의 인원수가 동시에 20인 이상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관람자”라 함은 유·무료 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사용자 구분 중 “어린이”라 함은 12세 이하의 자를 말하고,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고, “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라 말한다.

제4조(기능)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의 예술 및 문화활동 활성화
2. 시민의 문화활동을 위한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3. 시민의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한 시설물 제공
4.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5. 기타 시민복지 증진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문화센터의 사용허가) ① 문화센터 시설에 대하여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을 접수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행사 등과 중복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강·문화강좌 및 교양·문화강좌를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상시 사용자를 위한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단체)가 20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되 영종도에 소재한 기관단체, 시민에 대하여 우선 순위로 허가 한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건강·교양·문화·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사
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건강·문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가하는 행사
5. 공연·전람·전시 등 문화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복지행사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 문화강좌, 헬스, 수영 등에 대하여는 주 1회, 명절 연휴, 근로자의 날
2.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명절 연휴
3. 그 밖에 시장이 관리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 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시간 등) ① 문화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의 유지 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조기 : 06:00~09:00

2. 주간 : 09:00~18:00

3. 야간 : 18:00~21:00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2.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시설에 위험이 예상될 때
3. 화기(버너 등), 음식물류 등의 물품을 수반하거나 시설물의 손상이 예상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사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문화센터내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11조(사용료) ① 문화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납부할 전용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행사의 경우 행사 종료 후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세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 수입총액의 20%를 사용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문화센터시설별 활용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요금 및 징수방법은 주차장 여건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내 사용료와 그 밖의 교육프로그램(강습료 포함) 사용료는 시설별 여건에 따라 필요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입장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하며, 실제 사용한 부속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문화·복지·건강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유공자
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경로우대자

④ 수영장 등록 회원 중 12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⑤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한다. 단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13조(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사용승인을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시장은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처분에 의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100을 반환
 2.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수강료의 경우 개강일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행사에 있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 ②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는 그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또한 훼손된 시설에 대하여도 위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및 철거비용, 시설물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등에 대하여는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은 위·수탁자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문화센터

시설물 및 부속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전용사용 행사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와 사용자의 공동책임으로 하며,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쓰레기 포함)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문화센터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쓰레기 포함)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된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유지관리 및 사용목적에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수탁 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센터 전용사용료(제11조 관련)

구분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시간	대 관 료 (기준액 원)		비 고	
대 강 당	행 사	4시간	평 일 : 40,000 주말, 공휴일 : 60,000		▪ 무대/객석376 ▪ 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당 50% 가산 ▪ 리허설은 50% 감면	
강 의 실	행 사	1시간	10,000		▪ 강의실 I, II, III, 다목적실 등	
전 시 홀	전시	1일	70,000		▪ 냉·난방, 전기 등 사용료 포함	
체 육 관	경기 및 행사	2시간	평 일 : 40,000 주말, 공휴일 : 60,000		▪ 관람석 100석포함	
게이트볼장	경기	1일	무 료		무 료	
테니스장	사용구분	기 준	일일 사용료		▪ 주간은(06:00~18시) ▪ 야간은(18:00~22시) 조 명사용료 포함 금액 임. ▪ 전용사용시 4시간 이 하는 50% 감면	
			평 일	주말·공휴일		
	면이용	2시간	주간	8,000		10,000
			야간	10,000		12,000
	전용사용	1일 8시간	90,000			140,000

[별표 2]

부대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시 설 명			구 분	사용료(원)	비 고
피 아 노			3시간	15,000	
빔 프로젝트			1회	20,000	*스크린 포함
전기료	대 강 당		1회 4시간	40,000	* 시간연장시 1시간당 20,000원 추가
	체 육 관		1시간	10,000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냉 · 난 방	대 강 당		1시간	40,000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체 육 관		1시간	40,000	
	강의실 등		1시간	5,000	
음 향	대 강 당		1회	20,000	* 리허설은 50% 적용
	체 육 관		1회	20,000	
물 품	기본 대여 기준	책 상(10개)	1회	5,000	책상1개추가시 1,000원
		의 자(20개)	1회	5,000	의자1개추가시 500원
		단 상(1개)	1회	3,000	단상1개추가시 5,000원

관련법령 검토와 발제사항

관계법령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제2조(정의) ○ 제3조(사용허가) ○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제7조(사용 제한) ○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 제9조(사용 시간) ○ 제10조(사용료) ○ 제13조(사용료의 감면) ○ 제13조의2(이용사용료 등의 감면) ○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 제1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 제19조(사용자의 책임) ○ 제25조(위탁관리)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5조(사용료 등)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또한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중계방송(지상파 및 공중파(TV), 인터넷, 라디오 등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그 구성원이 20인 이상으로 단체인솔자에 의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입장권”이라 함은 사용자, 관람자 이외의 자가 체육시설을 입장 또는 이용하고자 할 때 구입해야 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9. “관람권”이라 함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10.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11.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2. “군인”이라 함은 「병역법」에 의하여 복무중인 군인으로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대를 말한다.
13.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4.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15.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학교에서 주최·주관하는 순수한 운동경기를 말한다.

16. “공공행사”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말한다.
17. “문화행사”라 함은 「공연법」에 의한 공연행사를 말한다.
18. “일반행사”라 함은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행사를 말한다.
19. “생활체육프로그램”이라 함은 생활체육보급, 시민체력향상과 건전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체육관련 프로그램을 말한다.
20. “명칭사용권”이라 함은 경기장 이름을 개인이나 기업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성명·사용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 및 시간·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사용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이외의 공연·전람·전시 등 문화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사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9조(사용 시간) 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허가 시간은 다음과 같다.

조기 : 06:00~09:00까지

주간 : 09:00~18:00까지

야간 : 18:00~23:00까지

심야 : 23:00~06:00까지

② 사용기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사용료) ① 체육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 별표 3,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와 같이 하며, 관람입장료는 별표9와 같이 정한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관람입장료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체육시설별 활용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요금 및 징수방법은 주차장 여건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체육시설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와 그 밖의 교육 프로그램 사용료는 시설별 여건에 따라 필요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 (팀을 포함한다)로서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의 훈련계획에 의하여 훈련하는 경우

3. 시 단위의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는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2.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 소속 단체가 개최하는 공식경기 및 체육활동 등 행사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2. 그 밖에 체육진흥 및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⑤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한다. 단,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13조의2(이용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별표1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사용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14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10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② 이용권,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처분에 의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철거요구를 하여야 하며 철거요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철거치 아니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정한 예치금은 시에 귀속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및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

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연고프로구단, 생활체육관련단체,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및 제28조에 의거 사용료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할 수 있다.

③ 부대시설 사용료와 기타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설별 여건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 다만, 중복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그 유족과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그 유족과 가족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사상자·그 유족과 가족
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비 용 추 계 서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2. 소 요 비 용 : 연간 약 2,302백만원

구 분	산 출 기 초	소요비용
계		2,302백만원
민간이전	○ 하늘문화센터 시설운영비 ※ 붙임 : 예산산출내역	2,302백만원

□ 하늘문화센터 운영비용(예산산출내역)

(단위:천원)

구 분 과 목	운 영 비 용		비고
	인 건 비	경 비	
간접관리비		137,800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인 건 비	894,034		급여, 제수당,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복리후생비		182,146	사업주 부담금 및 급식보조비
여비교통비		6,120	관내 및 관외여비
통 신 비		11,880	전화, 정보통신 전용회선료
수도광열비		346,619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		4,580	자동차세, 고속도로통행료 등
일반수용비		39,705	기본사무용품비, 홍보수용비 등
피 복 비		2,000	직원근무복, 강사 수용복 등
도서인쇄비		9,612	각종 서식유인비, 업무관련서적 등
수선유지비		39,652	건물, 기계, 전기, 통신설비유지비
차량유지비		5,400	차량유지관리비 및 유류비
보 험 료		18,100	차량보험 등 각종보험가입
지급수수료		27,030	감정평가수수료 및 무인경비이용료 등
관서업무부		5,481	정원가산 업무비, 부서운영 업무비
교육훈련비		2,800	시설안전관리자 교육 등
재료비기타		26,285	청소용품 및 기자재 구입
행사등 잡비		14,692	사업관련회의비, 특근매식비 등
광고선전비		600	홍보전단지 광고비
위탁관리비		437,668	경비,청소용역 및 기계실 용역
보 상 비		82,560	생활체육 및 문화강좌 보상비
공탁금등		2,450	환경개선부담금 및 각종협회비
예 비 비		46	일반예비비
자산취득비		4,740	생활체육장비 구입
소 계	894,034	1,407,966	
총 계	2,302,000천원		